

2020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변경(안)

안 건 번호	2020-6
-----------	--------

발의년월일: 2020. 8. 3.
제안자: 학교장
담당자: 류명기

1. 제안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휴업으로 인해 학사일정 변경 필요
- 2020. 8. 17.(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학사일정 변경 필요
(휴업기간: 중3 2020. 3. 1 ~ 4. 8. 중1,2 2020. 3. 1. ~ 4. 15.)

2. 운영 기간: 2020. 3. 1. ~ 2021. 2. 28.

3. 주요 내용

- 가. 2020학년도 임실동중학교 학사일정 변경(안)
- 나. 학기 운영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1학기	중3 2020.4.9.(목)~ 2020.8.17.(월)	2020.4.9.(목)~2020.8.14.(금)	
	중1,2 2020.4.16.(목) ~ 2020.8.17.(월)	2020.4.16.(목)~2020.8.14.(금)	
2학기	2020.9.1.(화)~2021.2.28.(일)	2020.8.31.(월)~2021.2.28.(일)	

- 수업일수: 3학년(177일), 1,2학년(173일)

붙임 2020학년도 임실동중학교 학사일정 변경(안) 1부.

2020학년도 학사일정(안)

임실동중학교

월	주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창의적체험활동			출석수 (3년)	출석일수 (1,2년)									
									금(6)	금(6)	금(7)											
3		29	1	2	휴업일	3	휴업일	4	휴업일	5	휴업일	6	휴업일					0	0	0	0	
		7	8	9	휴업일	10	휴업일	11	휴업일	12	휴업일	13	휴업일					0	0	0	0	
		14	15	16	휴업일	17	휴업일	18	휴업일	19	휴업일	20	휴업일					0	0	0	0	
		21	22	23	휴업일	24	휴업일	25	휴업일	26	휴업일	27	휴업일					0	0	0	0	
		28	29	30	휴업일	31	휴업일											0	0	0	0	
4						1	휴업일	2	휴업일	3	휴업일							0	0	0	0	
	1	4	5	6	휴업일	7	휴업일	8	휴업일	9	3학년 온라인개학 자율3학년1시간	10						2	2	0	0	
	2	11	12	13	생명존중주간	14		15	총선일	16	1,2학년 온라인개학 자율1,2학년1시간	17		동아리	동아리			4	6	2	2	
	3	18	19	20	생명존중주간 자율1,2,3학년 2시간	21	교육과정설명회	22		23		24							5	11	5	7
	4	25	26	27		28		29		30	석란일								3	14	3	10
5	5											1						1	15	1	11	
	6	2	3	4		5	어린이날	6		7		8						4	19	4	15	
	7	9	10	11		12	1,2,3학년자율 1시간	13		14		15	스승의 날					5	24	5	20	
	8	16	17	18		19		20		21		22		자율				5	29	5	25	
	9	23	24	25		26		27		28		29						5	34	5	30	
6	10	30	31	1	양성평등교육 주간	2		3		4		5			봉사	봉사		5	39	5	35	
	11	6	7	8		9		10		11		12			진로			5	44	5	40	
	12	13	14	15		16		17		18		19			동아리	동아리		5	49	5	45	
	13	20	21	22	1학기 1차고사 (순회과목)	23	영어듣기평가 (중1)	24	영어듣기평가 (중2)	25	영어듣기평가 (중3)	26			진로			5	54	5	50	
	14	27	28	29		30												2	56	2	52	
7	15							1		2		3			봉사	봉사		3	59	3	55	
	16	4	5	6	수업공개주간	7		8		9		10			동아리	동아리		5	64	5	60	
	17	11	12	13		14		15		16		17			봉사	봉사		5	69	5	65	
	18	18	19	20		21		22		23		24			봉사	봉사		5	74	5	70	
	19	25	26	27		28		29	1학기 2차고사	30	1학기 2차고사 (순회과목)	31	1학기 2차고사					5	79	5	75	
8	20	1	2	3		4		5		6		7			봉사			5	84	5	80	
	21	8	9	10		11		12		13		14	방학식 교육과정위 크숍					5	89	5	85	
	15	16	17	여름방학	여름방학	여름방학	여름방학	여름방학	여름방학	여름방학	여름방학	여름방학	여름방학									
구 분																						
					출석일	행사일	수업일	출석일	행사일	수업일	출석일	행사일	수업일	출석일	행사일	수업일	출석일	행사일	출석일 (3년)	출석일 (1,2년)		
	1학년	17	0	17	16	0	16	17	0	17	17		17	18	0	18	85				85	
	2학년	17	0	17	16	0	16	17	0	17	17		17	18	0	18	85				85	
3학년	18	0	18	17	0	17	17	0	17	18		18	19	0	19	89				89		

월	주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창의적체험활동			출석 일수 (1,2,3년)									
									금(6)	금(6)	금(7)										
8	22			31	개학식								1	1							
	23					1		2	3		4			동아리	동아리	4	5				
	24	5	6	7	학부모상담주간 수업공개주간 생명존중주간	8		9	10		11		진로			5	10				
9	25	12	13	14	생명존중주간	15	영어듣기평가 (중1)	16	영어듣기평가 (중2)	17	영어듣기평가 (중3)	18			동아리	동아리	5	15			
	26	19	20	21		22		23	24		25	섬진강 즐기 걷기대회	자율			5	20				
	27	26	27	28		29	금요일수업	30	추석연휴							2	22				
	28								1	추석	2	추석연휴				0	22				
	29	3	4	5		6		7	8		9	한글날				4	26				
10	30	10	11	12	2학기 1차고사	13	2학기 1차고사 (순회과목)	14	2학기 1차고사	15	입실 교육 한마당(진로4)	16			동아리	동아리	5	31			
	31	17	18	19	꿈끼탐색주간	20		21	22		23	애플데이및학교 폭력예방캠페인			동아리	동아리	5	36			
	32	24	25	26		27		28	추계체육대회 (자율7)	29	봉황제 (동아리7)	30	추계현장 체험학습 (진로6)			5	41				
	33	31	1	2		3		4		5	생애주기별 학생안전체험	6			동아리	동아리	5	46			
	34	7	8	9		10		11	12		13		진로			5	51				
11	35	14	15	16		17		18	19	대학수학능력 시험	20				동아리	동아리	5	56			
	36	21	22	23		24		25	26		27		진로			5	61				
	37	28	29	30												1	62				
	38				1	2학기 2차고사	2	2학기 2차고사 (순회과목)	3	2학기 2차고사	4				동아리	동아리	4	66			
	39	5	6	7		8		9	10		11	중3내신산출 기준일	진로			5	71				
12	40	12	13	14		15		16	중3내신산출 완료일	17		18			동아리	동아리	5	76			
	41	19	20	21	금요일 수업	22		23	24	학생회장선거일	25	성탄절				4	80				
	42	26	27	28		29		30	방학식 교육과정워크숍	31	겨울방학					3	83				
	43	30	31	1	개학식	2		3		4		5	졸업식			5	88				
		6	7	8	학년말방학	9	학년말방학	10	학년말방학	11	설연휴	12	설날								
2		13	14	15	학년말방학	16	학년말방학	17	학년말방학	18	학년말방학	19	학년말방학								
		20	21	22	학년말방학	23	학년말방학	24	학년말방학	25	학년말방학	26	학년말방학								
		27	28																		
구 분				출석일	행사일	수업일	출석일	행사일	수업일	출석일	행사일	수업일	출석일	행사일	수업일	수업일	행사일	출석일 (1,2,3학년)			
	1학년			19	0	19	19	0	19	18	1	17	17	1	16	15	1	14	85	3	88
	2학년			19	0	19	19	0	19	18	1	17	17	1	16	15	1	14	85	3	88
	3학년			19	0	19	19	0	19	18	1	17	17	1	16	15	1	14	85	3	88

임실동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안 건 변 호	2020-7
------------	--------

발의년월일: 2020. 8. 3.
제 안 자: 학 교 장
담 당 자: 류 명 기

1. 제안이유

- 가. 2019. 11. 1. 제정 이후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
- 나. 교권보호를 위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문장 정비

2. 주요내용

-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안 제2조)
 - 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기능(안 제2조)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재의 조정.
- 구성(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3월1일~2월말)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회의 소집(안 제6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교육활동 침해 유형(안 제11조)
 -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손괴 등의 범죄 행위
 -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의 범죄 행위
 - 교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임실동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정 2019. 11. 1.

전부 개정 2020. 8. 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 15조 제7항에 따라 임실동중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 ① 학교의 장, 학생, 학생의 보호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⑥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3월1일~2월말)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교원위원 2인
 2. 학교전담경찰관 1인

3. 학부모 대표 1인

4. 지역인사 1인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제6조(회의소집)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회와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당사자의 출석과 진술권 보장)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 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척 등 사유가 있는 위원은 개의 정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 또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학교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교육활동 침해 유형)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손괴 등의 범죄 행위
2.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의 범죄 행위
3. 교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제13조(피해교원 보호조치)

- 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피해교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즉시 수행해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
- ③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치료비 등)은 가해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등이 부담한다. 그러나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 보호조치 비용을 관할청이 선지급하고 뒤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피해교원은 5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활동 침해 학생 대한 조치의 종류) ‘교원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제15조(교육활동 침해 학생 대한 조치 적용 기준)

‘교원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1. 제1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날 부터 7일 이내

2. 제14조 제6호에 따른 조치의 경우: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③ 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학생에 대하여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④ 교육부 고시 제2019-203호(2019.11.5.)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심의기준과 조치결정기준은 따로 정한다.(별첨1)

제16조(교육활동 침해 학생 대한 조치의 방법)

① 학교에서의 봉사

1. 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

1. 10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해당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3. 해당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해당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게 해야 한다.

3.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4.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④ 출석정지

1. 출석정지 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고 그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한다.

2.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학급교체

1. 피해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가급적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학급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

2. 제1호의 사항이 불가피하게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전학

1. 전학을 보내기 전 반드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2. 전학을 간 이후에는 피해교원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학 전의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⑦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 ⑧ 제14조의 제1, 2, 4, 5호 조치를 내릴 경우 제3호 조치를 함께 병과조치 할 수 있다.
- ⑨ 제14조 제3호 조치의 경우에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교육청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⑩ 제14조 제6호의 조치 결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다.
 - 2. 전학 조치는 본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다.
 - 3. 위의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조치할 수 있다.

제17조(의결 통보 및 처분 등)

- ①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심 청구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심의 확정과 재심 청구)

- ①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위원회가 조치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불복절차 및 불복 방법)

- ①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불복 절차 및 방법
 - 1. 제14조 제1호부터 제5호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 행정소송)
 - 2. 제14조 제6호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청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행정심판, 행정소송)
- ② 피해교원의 불복 절차 및 방법

1. 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교원지위법령에 피해교원의 재심 청구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로 진행할 수 있다.
2.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내용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0조(분쟁조정 신청)

-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21조(분쟁조정 개시)

- ① 위원회가 제20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분쟁조정 거부·중지 및 종료)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전라북도교원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제23조(분쟁조정 결과 처리)

-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제25조(회의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26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요청
2.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제30조(규칙개정 심의와 결정)

- ① 위원회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칙 개정안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31조(연수와 교육) 개정된 학교교권위원회규칙은 학생과 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제3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8. 12.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및 그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되거나 호선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하여 연임 제한에 관한 부분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별첨1>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2019.11.5.)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가. 침해행위 심각성	나. 침해행위 지속성	다. 침해행위 고의성	구분	라. 침해학생 반성 정도	마.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매우높음	5	5	5	높음	0	0
높음	4	4	4	보통	1	1
보통	3	3	3	낮음	2	2
낮음	2	2	2	없음	3	3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② 추가 판단 요소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독 조치 또는 1호·2호·4호·5호·6호와 병과 가능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기본판단요소 가~마의 합)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없음	0~4	-		
교내선도	1호	5~7	학교에서의 봉사	
외부기관	2호	8~10	사회 봉사	
연계선도	3호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 환경 변화	교내	4호	11~13	출석 정지
		5호	14~16	학급 교체
	교외	6호	17~21	전학
		7호		퇴학

○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2.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위의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동일학생에 대한 최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말함.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방법 변경 (안)

안 건 번호	2020-8
-----------	--------

발의년월일: 2020. 8. 3.

제 안 자: 학 교 장

담 당 자: 송 수 경

1. 제안이유

- 2021학년도 임실동중학교 방과후학교 운영방법을 교육지원청에 위탁신청하여 강사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방안으로 심의(자문)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방안 변경 신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방과후학교 운영	- 학교 직접 강사 채용 - 교육지원청 순회강사 지원받음	- 교육지원청에 순회 강사를 지원 받아 운영	

나. 제안이유

- 일선학교에서 강사 채용의 어려움이 있음.
- 방과후학교 전체 위탁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추구

2020학년도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안)

안 건 번호	2020-9
-----------	--------

발의년월일: 2020. 8. 3.

제안자: 학교장

담당자: 송안나

1. 제안 사유

임실동중학교 학교생활규정은 2015년 4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서 상위법령 위배되는 규정과 모호한 용어가 많으며, 학생인권을 위한 생활지도 시행 규칙에 어긋나는 규칙들이 많아 전부개정의 요청에 의해 전부개정(안)을 심의 요청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근거: <초, 중등 교육법> 제 8조(학교규칙)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자치 규범인 학교규칙(학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그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한 부분을 학교생활규정이라고 한다.

1)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 할수 있다.

2)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추진경과: 규정개정심의위원회(7명)를 통한 발의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수렴(2차례)을 통해 최종시안을 마련

- 2020. 6. 4. 학교 생활 규정 컨설팅
- 2020. 6. 8.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교사 2, 학생 3명, 학부모 2명)
- 2020. 6. 15. 규정개정심의위원회 1차 회의
- 2020. 6. 16.~6. 19. 학교공동체 구성원(학부모, 학생, 교직원) 설문조사
- 2020. 6. 26. 학교공동체 구성원 2차 회의를 통한 의견조사
- 2020. 6. 29. 학교공동체 구성원 의견조사(전교생 각반 회의)
- 2020. 7. 3. 규정개정심의위원회 2차 회의
- 2020. 7. 6.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시안 마련

붙임: 학교생활규정 최종안 1부.

임실동학교 생활규정

제정 2002. 10. 01.

개정 2015. 03. 23.

개정 2020. 8.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임실동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제1항, 제17조, 제18조의 4,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제3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 ③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1) 「교육기본법」 제12조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사의 교육권)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 【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 ①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2)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없는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와 제91조 제1항³⁾에 근거하여 현장 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

제6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4)

-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7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5)

2)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5조에 근거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4)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에 근거.

5)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8조에 근거

- ①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⁶⁾
- ②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학생, 운동 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포함한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③ 학교는 차별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7)

-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에 관한 권리】 8)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제10조 【휴식을 취할 권리】 9)

-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며 정규교과 시간 외의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1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10)

-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 ② 교복(춘추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여부와, 색상·형태 등은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12조 【사생활의 자유】 11)

6)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8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에 근거

8)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0조에 근거

9)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1조에 근거.

10)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근거.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4219(2018.7.5.)-“편안한 교복착용관련 안내”

- ①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않는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보관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때로 최소화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
-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¹²⁾
- ③ 학교는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다.¹³⁾

제13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4)

- ① 학생은 가족, 친구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를 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¹⁵⁾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때는 이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정보에 관한 권리】 16)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의 정보를 공개 청구할 권리가 있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거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으면 고치거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양심·종교의 자유】 17)

-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¹⁸⁾

11)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3조에 근거,
 12)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실내 CCTV 설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CCTV로 인하여 실내에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모든 행동이 모두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교사들의 수업권 및 교육의 자주성 저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탈의실이 없어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신체가 노출되므로 실내 CCTV를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13)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관행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아동이 사생활의 내용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유로운 사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검사·평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일기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또한 일기장 검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 다른 방법이 가능하므로 그 개선을 권고한다.”
 14)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4조에 근거,
 15)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식) 명찰을 달고 다니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탈부착식 이름표 보급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16)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5조에 근거,
 17)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6조에 근거,
 18)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아예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반성과 약속의 의미로 학생에게 권고하고 교육적 지도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증표로 반성문과 서약서를 강요하는 양심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16조 【표현의 자유】 19)

- ①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
- ④ 학생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지를 포함한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을 지원한다.

제17조 【자치활동의 권리】 20)

- ① 학교는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한다.
- ②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회가 예산을 운영하며, 담당교사를 통해 개산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
- ③ 학교는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들 수 있다.
- ⑤ 동아리는 학술제, 예술제, 축제 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18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21)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 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제19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22)

-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 【건강에 관한 권리】 23)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충분한 보건시설과 쾌적한 환경(냉난방, 미세먼지 제거 등)을 확보하고

의미한다.

19)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7조에 근거.
20)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8조에 근거.
21)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에 근거.
22)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0조에 근거.
23)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5조에 근거.

유지한다.

제21조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24)

-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의 청구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3장 학생 생활

제22조 【기본행동】

- ① 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 ②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 ⑥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⑦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제23조 【수업 태도】

- ①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 ②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 ⑥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제24조 【휴식시간과 여가활동】

- ① 학교의 장,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여가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의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24)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7조에 근거.

④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제25조 【용모】 (당해 연도 학생회 규칙을 따른다.)

- ① 학생의 두발은 학생다운 형태를 유지하며 자유롭게 한다.
- ②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 교복 착용 시기, 치마나 바지 착용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 ③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여 신는다.

제26조 【시설이용과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 ②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얻는다.
- ③ 수도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 ④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27조 【개인 소유물】

- ① 다른 학생과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28조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 1. 성냥,ライター,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 5. 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분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 8. 차량이나 오토바이
- 9. 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2조²⁵⁾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2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과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과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제29조 【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27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과 흡입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③ 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 ④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30조 【학생 개인물품 관리】

- ① 제27조와 제28조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며,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 ②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물품은 5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한 후 즉시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교육활동 시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제31조 【전자기기 사용】 26)

- 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 게재· 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제7조 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나. 제7조 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 26)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3조 ④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강제하기보다는 학생에게 사용예절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학생 스스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휴대전화기와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학교에 따라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하교할 때 되돌려주는 방식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사적소유물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같은 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 ※ 휴대전화 보관 후 분실 시 학교는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하면 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한다. (교육부), 학교 관리 중 분실한 휴대폰 등 보상 지원계획 안내(인성건강과-35456 2013.12.17.)
- ※ 일부 학교의 학교규칙에서 학생들의 학교 내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한 별칙으로 전자기기를 학교가 상당 기일 동안 일시 수거하는 사례가 있음.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휴대하지 못해 안전과 관련된 긴급 상황 시 구조 요청 등을 할 수 없는 등 안전이 우려됨. 학교규칙 운영 및 제·개정 운영 안내(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① 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③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교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사(시험)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제32조 【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을 사용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 ④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33조 【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²⁷⁾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2919 2014.5.19.)

※ 학생개인물품 소지 관리에 관한 정책권고(민주시민교육과-3800 2019. 5. 3.)

27) 체벌금지 조항과 교사의 권한 및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에 관한 항목을 반드시 넣도록 권고하며,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의 준거가 되기도 하며 최소한의 학생지도의 기준선을 명시한다는 의미가 크다.

※체벌 금지관련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3.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제34조 【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적 상담과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행동개선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5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 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 학부모 통보와 상담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²⁸⁾와 징계

제37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① 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업무담당자, 학생상담 업무담당자, 교무기획 업무담당자, 소속 학급 학생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는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인성인권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²⁹⁾

28) “징계위원회”로 명칭을 정할 수도 있으나, 징계도 교육의 일부로 보아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29)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정수는 학교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8조 【징계 원칙】

-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제39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30)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학교 내 봉사³¹⁾: 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사회봉사: 10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기간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기간 최소 10일 이상)
- ④ 출석정지³²⁾: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퇴학처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행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해당)
 - 1. 학칙을 위반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학생
 - 2. 결석이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학생
 -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 ⑥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40조 【징계 방법】

- ① “학교 내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

30) 복수 징계를 할 수 있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징계와 달리 반드시 하나의 징계만 할 수 있음. 징계의 기간은 학교폭력대책 위원회가 정한 기간과 동일해도 됨
 31) 조치(징계)로 인한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시간 불인정
 32) ‘등교정지’가 아니므로 학교 내에서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 보호자 요청 시 보호 가능 확인 후 가정학습(과제 부여 등 학습 조치) 가능

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④ “출석정지”는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퇴학처분: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고등학교에 해당)

1.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당해 학생,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의사가 있는 학생에게 반드시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해야 한다.

⑥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42조 【징계 기준】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징계기준]

구분	항	행위 내용	징계 내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전학 권고)
예절	1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
준법	2	공공 문서를 위·변조하거나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3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4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5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6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수업	7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시험	8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9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훔친 학생	○	○	○	○
약물	10	교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한 학생	○	○	○	
	11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폭력	12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	○	○	○	○
	13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	○	○	○
	14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	
	15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스토키 행위를 한 학생	○	○	○	○
금품	16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한 학생	○	○	○	
기타	17	소지 및 사용 불가능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	
	18	학습 기자재(컴퓨터)를 학습 목적 외로 사용한 학생	○	○		
	19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을 한다.	○	○	○	○
	20	징계 기준 외의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	○	○

제43조 【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4조 【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 【징계 경감과 해제】

- ①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②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46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교육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학생 위원은 전체의 40%³³⁾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은 교사위원 2명, 학생위원 3명, 학부모위원

2명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와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교사회의 의결
3. 학부모회의 의결
4. 학생회의 의결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제47조 【문헌조사와 의견수렴】

① 위원회는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헌조사와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48조 【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49조 【연수와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8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항은 규정개정심의 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25조> 용모(당해연도 학생회 규칙을 따른다.)

2020 학년도 임실동중 용모 규정안

33) 전라북도교육청 권장 사항이며 민주적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한 최소 조건이다.

● 결정 사항

1. 교복 생활복 착용 원칙/ 3학년의 경우 부모님 확인서 통한 상담이후 상의 사복 허용(교복과 유사색 허용)
2. 두발규정 : 과마허용, 염색불허, 길이 자유.
3. 체육시간 다음시간까지 사복허용 / 금요일, 현장체험날은 자유복장 허용
4. 겉옷은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사복허용(속옷은 교복착용)